

2023년도 제1회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3년도 제1회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삼척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계급	직렬	직류	선발예정인원	필기시험과목 (1·2차 병합 실시)		시험시간
				제1차	제2차	
8급	간호	간호	3명	생물	지역사회간호	40분
9급	시설	건축	2명	물리	건축계획	(10:00 ~10:40)

2. 시험방법

○ 시험절차 및 방법

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홈페이지 공고 : `23.10.13. ~ 10.24. (11일간)응시원서 접수 : `23.10.25. ~ 10.31. (7일간)
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자격요건 심사 ※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
필기시험 ※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시험과목 : 과목당 100점만점, 과목별 20문제, 4지 택1형 (1차·2차 시험 병합실시)
면접시험 ※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·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3. 응시 자격

○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5.12.31. 이전 출생자)

○ 응시결격사유 등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

※ 적용기준일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
【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【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】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】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】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○ 거주지 제한 :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

- 1)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
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)
- 2) 공고일 전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
(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)

○ 자격증 제한 :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현재 유효해야 함.

직렬	직류	대 상 자 격 증
시설	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사 :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 • 기능장 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 • 기사 :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 • 산업기사 :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
간호	간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산사 • 간호사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원서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발표일
'23.10.25.(수) ~ 10.31.(화)	필기	'23.11.06.(월)	'23.'11.25.(토)	'23.'11.29.(수)
	면접	'23.11.29.(수)	'23.12.05.(화)	'23.12.11.(월)

5.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3. 10. 25.(수) ~ 2023. 10. 31.(화)

- 원서교부 : 삼척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/ 알림마당 / 채용시험공고
- 접수장소 :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(등기)접수

* 우편(등기)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,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.

* 우편(등기) 접수 : (29514)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자

※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 수수료를 우편물에 동봉하여야 하며,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송부

○ 응시자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 (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)
 - *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
 - * 응시수수료 : 5,000원(삼척시 수입증지 부착)
 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
-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(A4용지 2~3매 정도) 1부
-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-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
- 경력증명서 각 1부
- 자격증 사본 1부(필수자격증은 응시자 전원 제출, 가산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)

6. 가산특전

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: 해당없음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선발인원 3명 이하 ※ 해당사항 없음	*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 특전 -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의사상자 등	선발인원 3명 이하 ※ 해당사항 없음	* 의사상자 가산 등 특전 -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공통적용 가산점 : 해당없음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통신, 정보처리,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(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 등) 소지자에 대한 자격증 가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(2021. 1월)에 따라 가점부여 없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(전보)이 제한됩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 -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(시정소식/알림마당/채용시험공고)란에 공고(게시)하며,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스마트워치, 무선호출기, 블루투스이어폰 등) 전산기기(전자수첩, 전자계산기 등) 및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**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,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**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,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임용결격사유,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 득점)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합니다.
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팀(☎033-570-32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